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기업성장 견인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과 장 정대순 사무관 이동훈	042-481-8172 042-481-5920
	2015년 3월 23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3월 22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변리사 수입 표준계약서 제정

특허청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 위임에 따른 의무와 위임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변리사 수입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정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허 등의 출원·등록, 이와 관련한 심판·소송은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그간 의뢰인과 변리사 간 계약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표준계약서는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따라 ‘출원업무위임계약서’ 및 ‘심판·소송 등 사건위임계약서’로 나누어지며, 주요 내용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의무와 위임범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수 유형, 계약종료의 구체적인 시점 등에 관한 사항이다.

앞으로 의뢰인과 변리사 간 계약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됨으로써 계약내용 또는 위임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내용이나 위임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해 이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해결에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다”면서 “표준계약서를 통해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계약내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특허청은 표준계약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게재하는 한편, 변리사 의무연수 시, 표준계약서 내용과 활용방법을 소개하는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또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 끝.

지식재산권 출원업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수임인(을): 변리사 / 특허법인 / 특허법인(유한)

사건의 표시

사 건 명	
-------	--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출원업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출원업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출원업무의 범위는 국내 출원업무에 국한된다.

② 제16조에 따른 출원업무 종료 이후 발생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관한 연차등록료 납부와 상표에 관한 갱신 신청 등은 별개 위임 업무로 한다.

③ 이 출원에 관한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의신청(상표의 경우에 한함), 특허심판원·법원 등에 대한 사건은 별개 위임 업무로 한다.

제3조 【수권범위】 ‘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위임장에 따른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리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출원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갑’은 ‘을’이 출원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기 본 료】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기본료(착수 보수)로 금_____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기본료는 ‘을’이 출원업무에 관한 연구, 조사, 명세서 작성 등 출원업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출원 포기·취하, 당사자의 사망, 대리인 변경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이 출원업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11조제2항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④ ‘갑’과 ‘을’이 합의하거나 ‘갑’ 또는 ‘을’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 또는 ‘을’의 소속변리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단, 담당자 등의 표준 시간당 보수율은 별지로 첨부한다.)을 기본료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7조 【출원보수】 ‘갑’은 ‘을’과 별지에 합의한 출원업무 진행결과로 발생하는 출원보수에 대하여 출원 전에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중간사건처리보수】 ① 출원 후 심사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발생하는 중간사건 처리를 위하여 ‘갑’은 ‘을’에게 별지에서 합의한 중간사건처리보수를 지급한다.

② 전항의 중간사건처리보수는 ‘을’이 중간사건 처리를 위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출원 포기·취하, ‘갑’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을’이 중간사건 처리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11조제2항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 ④ ‘갑’과 ‘을’이 합의하거나 ‘갑’ 또는 ‘을’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 또는 ‘을’의 소속변리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단, 담당자 등의 표준 시간당 보수율은 별지로 첨부한다.)을 중간사건처리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한다.

제9조 【성과보수】 ① 출원업무가 등록결정서를 받게 되어 성공한 때에는 성공보수로 금_____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성공으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성공으로 보고, 전항에 정한 성공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을’이 기본료 또는 중간보수를 지급받은 이후에도 출원업무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성공가능성이 있었으나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출원을 포기·취소한 경우
- 2. ‘을’이 기본료 또는 중간보수를 지급받은 이후에도 출원업무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성공가능성이 있었으나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10조 【비용부담】 ① 제6조부터 제9조에서 규정한 보수 외에 ‘을’이 출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특허청 관납료, 번역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전액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출장 일당으로 1일 금_____원을 비용 발생 시 지급한다.

제11조 【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통지의무】 ① ‘을’은 출원업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출원 당시 ‘을’에게 알린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갑’이 통지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에게 그 책임이 없다.

제13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출원업무 및 중간사건 처리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출원업무 및 중간사건의 처리를 중단 또는 사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물품의 보관 및 폐기】 ‘을’이 출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물품들은 위임 종료 시 또는 출원업무 종료 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물품 등을 폐기할 것을 ‘갑’에게 통지한 후 이를 폐기 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

하고, 위임업무수행 상 필요하거나 법률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계약의 종료】 ① 출원에 관하여 등록원부에 등록된 때 위임업무는 종료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최초 등록료 납부에 관한 절차 및 비용을 ‘갑’의 주소지 또는 연락처(제12조제2항에 의해 ‘갑’이 ‘을’에게 통지한 변경된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있을 경우 변경된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명시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등록료 납부기한일의 직전일까지 ‘갑’이 ‘을’에게 등록 비용을 입금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초 등록료 납부 기한이 경과하였을 때 위임업무는 종료된다.

② 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거절결정에 대하여 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거절결정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한 때 위임업무는 종료된다.

③ ‘갑’이 서면으로 출원의 취하, 포기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위임업무는 종료된다.

제17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로 해결한다.

제19조 【관할법원】 제18조에 따른 상사중재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이 상사중재를 거부할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20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연락처:

(을) 주 소:

사무소명:

대표변리사: (인)

연락처:

[별 지]

1. 출원보수

가. 기본수수료

(1) 특 허

연번	항 목	보 수 액	확 인
1	독립항 1항 당	금_____원	☐
2	종속항 1항 당	금_____원	☐
3	명세서 등 20면 초과시 1면 추가당	금_____원	☐
4	도면 작성 (1도 당)	금_____원	☐

(부가가치세 별도)

(2) 실용신안

연번	항 목	보 수 액	확 인
1	독립항 1항 당	금_____원	☐
2	종속항 1항 당	금_____원	☐
3	명세서 등 15면 초과시 1면 추가당	금_____원	☐
4	도면 작성 (1도 당)	금_____원	☐

(부가가치세 별도)

(3) 상 표

연번	항 목	보 수 액	확 인
1	기본 1상표 1류 외 류 추가	금_____원	☐

(부가가치세 별도)

(4) 디 자 인

연번	항 목	보 수 액	확 인
1	기본 7도 외 도면 추가 (1 디자인 당)	금_____원	☐
2	디자인 추가 (1 디자인 당)	금_____원	☐

(부가가치세 별도)

나. 추가 수수료

(1) 특 허

연번	항 목	보 수 액	선택여부
1	심사청구	금_____원	☐
2	선행기술조사(선행 특허 등)조사	금_____원	☐
3	우선심사 신청 (외부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금_____원	☐
4	우선심사 신청 (당소 선행기술조사 직접수행)	금_____원	☐
5	신규성 의제 주장	금_____원	☐
6	우선권주장 출원	금_____원	☐

(부가가치세 별도)

(2) 실용신안

연번	항 목	보 수 액	선택여부
1	심사청구	금_____원	☐
2	선행기술조사(선행 특허 등)조사	금_____원	☐
3	우선심사 신청 (외부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금_____원	☐
4	우선심사 신청 (당소 선행기술조사 직접수행)	금_____원	☐
5	신규성 의제 주장	금_____원	☐
6	우선권주장 출원	금_____원	☐

(부가가치세 별도)

(3) 상 표

연번	항 목	보 수 액	선택여부
1	선행상표조사	금_____원	☐
2	우선심사신청	금_____원	☐

(부가가치세 별도)

(4) 디 자 인

연번	항 목	보 수 액	선택여부
1	출원공개 신청	금_____원	☐
2	선행 디자인 조사	금_____원	☐
3	비밀유지 신청	금_____원	☐
4	복수디자인 출원	금_____원	☐
5	우선심사신청	금_____원	☐

(부가가치세 별도)

2. 중간사건 처리보수

가. 특 허

연번	항 목	보 수 액	선택여부
1	의견서 제출 (1회당)	금_____원	☐
2	보정서 제출 (1회당)	금_____원	☐
3	재심사 청구	금_____원	☐
4	기간연장 (1회당)	금_____원	☐
5	심사관 면담	금_____원	☐
6	조기공개	금_____원	☐
7	번 역 료 (A4 1장당)	금_____원	☐

(부가가치세 별도)

나. 실용신안

연번	항 목	보 수 액	선택여부
1	의견서 제출 (1회당)	금_____원	☐
2	보정서 제출 (1회당)	금_____원	☐
3	재심사 청구	금_____원	☐
4	기간연장 (1회당)	금_____원	☐
5	심사관 면담	금_____원	☐
6	조기공개	금_____원	☐
7	번 역 료 (A4 1장당)	금_____원	☐

(부가가치세 별도)

다. 상 표

연번	항 목	보 수 액	선택여부
1	의견서 제출 (1회당)	금_____원	☐
2	보정서 제출 (1회당)	금_____원	☐
3	기간연장 (1회당)	금_____원	☐
4	심사관 면담	금_____원	☐
5	번 역 료 (A4 1장당)	금_____원	☐

(부가가치세 별도)

라. 디자인

연번	항 목	보 수 액	선택여부
1	의견서 제출 (1회당)	금_____원	☐
2	보정서 제출 (1회당)	금_____원	☐
3	재심사 청구	금_____원	☐
4	기간연장 (1회당)	금_____원	☐
5	심사관 면담	금_____원	☐
7	번 역 료 (A4 1장당)	금_____원	☐

(부가가치세 별도)

지식재산권 사건위임계약서 [심판 · 소송 등]

위임인(갑):

수임인(을): 변리사 / 특허법인 / 특허법인(유한)

사건의 표시

사 건 명	
-------	--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범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범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 【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리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_____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 ② 전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 등 위임업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송·심판·이의신청 등의 부제기·불청구·취하, 포기, 인낙,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10조제2항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 ④ ‘갑’과 ‘을’이 합의하거나 ‘갑’ 또는 ‘을’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 또는 ‘을’의 소속변리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단, 담당자 등의 표준 시간당 보수율을 별지로 첨부한다.)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7조 【중간사건처리보수】 ① 심판 및 소송의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발생하는 중간사건 처리를 위하여 ‘갑’은 ‘을’에게 별지에서 합의한 중간사건처리보수를 지급한다.

- ② 전항의 중간사건처리보수는 ‘을’이 중간사건 처리를 위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송·심판·이의신청 등의 부제기·불청구·취하, 포기, 인낙,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을’이 중간사건 처리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10조제2항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 ④ ‘갑’과 ‘을’이 합의하거나 ‘갑’ 또는 ‘을’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 또는 ‘을’의 소속변리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단, 담당자 등의 표준 시간당 보수율을 별지로 첨부한다.)을 중간사건처리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한다.

제8조 【성공보수】 ① 위임사무가 심결·결정·판결, 화해(화해 권고 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전부 승소한 경우 : 금_____원(부가가치세 별도)

2. 일부 승소한 경우 :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②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전항에 정한 성공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을’이 착수금 또는 중간보수를 지급받은 이후에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승소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소송·심판·이의신청 등의 부제기·불청구·취하, 포기, 인낙, 상소취하를 한 경우

2. ‘을’의 심판·소송 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소송·심판·이의신청 등의 부제기·불청구·취하, 포기, 인낙, 상소취하를 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상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3. ‘을’의 심판·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물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 되거나 경정 처분된 경우

4. ‘을’이 착수금 또는 중간보수를 지급받은 이후에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승소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갑’이 정당한 사유 없

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 ③ 전항 제1호의 사유 중 ‘갑’의 부득이한 사유나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소송·심판·이의신청 등의 부제기·불청구·취하, 포기, 인낙, 상소취하를 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위임사무 수행경과를 감안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공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비율을 정한다.

제9조 【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납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번역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전액 ‘갑’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출장 일당으로 1일 금_____원을 비용 발생 시 지급한다.
- ③ 갑은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_____원을 예치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은 전항의 예치금 중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을’은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통지의무】 ①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사건 위임 당시 ‘을’에게 알린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을’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갑’이 통지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에게 그 책임이 없다.

제12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 또는 사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전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물품의 보관 및 폐기】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물품들은 위임사무 종료 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물품 등을 폐기할 것을 ‘갑’에게 통지한 후 이를 폐기 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위임업무수행 상 필요하거나 법률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계약의 종료】 소송·심판·이의신청 등의 부제기·불청구·취하, 포기, 인낙, 상소 취하, 결정, 판결 등의 경우 ‘갑’과 ‘을’의 위임관계는 종료된다.

제17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

다.

제18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로 해결한다.

제19조 【관할법원】 제18조에 따른 상사중재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이 상사중재를 거부할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20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연락처:

(을) 주 소:

사무소명:

대표변리사: (인)

연락처:

[별 지]

1. 중간사건처리보수

연번	항 목	보 수 액	확 인
1	의견서/준비서면 제출 (1회 당)	금_____원	☐
2	구술심리기일(기술/상표설명회) 및 변론기일 참석 (1회 당)	금_____원	☐
3	증거보전 신청/ 답변 제출	금_____원	☐
4	심판(소송)비용액 결정 청구	금_____원	☐
5	정보제공 제출	금_____원	☐

(부가가치세 별도)